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0일
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경훈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춘선, 박환희,
신복자, 왕정순, 이병윤,
이상욱, 이숙자, 이원형,
임춘대, 최민규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(일명 ‘민식이법’)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.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
5.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교통안전교육)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교통안전교육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</u></p> <p>5. <u>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</u>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0600000008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김동욱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06.

회신일 : 2023.10.0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(교통안전교육) 제1항제4호(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지도) 및 제1항제5호(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)를 신설함으로써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
☎ 02-2180-7952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